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116

2025년 9월 9일
교 육 위 원 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25년 8월 14일

3. 상정일자 :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5년 9월 9일 상정, 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1. 취득: 2건

○ 신설 : 1건

- 목적 : 고덕강일2지구 주택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 배치 및 인근 강빛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사업

- 대상교 : (가칭)서울강율초등학교

○ 증축(변경) : 1건

- 목적 : 실내 체육관 및 학생식당 확보, 노후된 급식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시설을 증축하는 사업

- 대상교 : 서울성내초등학교

2. 취득 및 처분: 2건

○ 신설 : 1건

- 목적 : 서울 동북권[1]에 거주하는 지체장애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구 성수공고 건물 일부를 증개축하여 특수학교를 신설하는 사업

- 대상교 : (가칭)성진학교

○ 증축(변경) : 1건

- 목적 :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과의 토지 매각 및 기부채납 협의에 따라 학교용지를 정형화하기 위한 사업

---

1) 동북권: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강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 대상교 : 서울영화초등학교 및 영등포고등학교

3. 취소 1건

○ 신설 : 1건

- 목적 : 동일 취학권역 내 (가칭)서울신길유치원 신설 추진, 원아수 추이, 유아배치시설 분포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취소

- 대상교 : (가칭)서울대방유치원

Ⅳ.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계획안은 2025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3116호로 제출되어 2025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취득 2건, 취득 및 처분 2건, 취소 1건 등 총 5건의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취득의 건(2건)

1) (가칭)서울강율초등학교 신설의 건

○ (가칭)서울강율초등학교 신설의 건은 고덕강일2지구의 학령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강동구 강일동 53-1 일원에 23학급 568명 규모의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는 토지비용을 포함하여 총 614억 8천만 원이며, 이 중 361억 1천만 원 상당의 학교용지 1만 2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표-1] (가칭)강율초 소요 예산 확보 계획

(단위: 천원)

연도	확보 현황	자체재원	학교신설 교부금	서울시 전입금	구청 전입금	기부채납 (무상공급)	합계	비고
2025	확보	40,000				36,108,000	36,148,000	용지무상공급 사전기획용역비
2026	예정	470,000	501,000				971,000	공모보상비 및 설계비
2027	예정	2,000,000	8,000,000				10,000,000	시설비
2028	예정	2,688,026	11,672,836				14,360,862	시설비
		5,198,026	20,173,836			36,108,000	61,479,862	

※ 용지비 산정: 12,000㎡×3,009천원(고덕강일지구 추정 조성원가) SH 무상공급
제외: 내부비품비 1,011,774천원(교육부 교부금 687,843천원 포함), 예비비 2,638,364천원

○ 고덕강일2지구는 서울고덕강일 공공택지개발지구 중 하나로 총 6개의 주택단지(3~8단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8월 현재 지구 내 단지별 개발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1개 단지(3단지)를 제외한 모든 단지의 입주가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 금번 학교 신설은 2027년 3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인

3단지와 2023년 10월 입주가 완료된 5단지의 학생 수요가 서울시교육청의 기존 수요예측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강빛초등학교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SH공사의 사전청약 자료와 주민등록상 학령인구 현황, 3단지의 분양 유형(공공분양) 등을 종합하여 고덕강일2지구의 학령인구 추이를 분석했을 때 고덕강일2지구의 초등학생 연령대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2)]

- 더욱이 고덕강일2지구는 강빛초등학교만 존재하고, 강빛초등학교는 2026학년도부터 과밀화될 것으로 예측되어 모듈러 교실이 설치될 예정이며,[3)] 가장 근거리에 있는 강일초등학교는 도보 등교를 위해 평균 1.4km(도보 22분)이 소요되는 등 다른 학교로의 학생 분산 배치가 어려워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표-2] 고덕강일2지구 내 단지별 현황

(2024.12.3.자 기준, 단위: 세대, 명)

지구	단지	입주연도	분양 유형 (세대수)	총 세대수	학생수	통학구역
고덕 강일 2지구	3단지	2027. 3. (예정)	공공분양(1,305)	1,305	330 (예상)	강빛초
	4단지	2020. 12.	공공분양(642), 국민임대(396), 장기전세(201)	1,239	206	
	5단지	2023. 10.	민간분양(809)	809	244	
	6단지	2020. 12.	국민임대(689), 장기전세(555)	1,244	172	
	7단지	2020. 12.	국민임대(619), 장기전세(406)	1,025	131	
	8단지	2021. 1.	공공분양(526), 국민임대(318), 장기전세(406)	946	162	
	계			5,622	915	2027년 +330명

○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학생배치계획에 따르면, 강빛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모듈러교실 설치와 (가칭)강율초 신설을 전제하더라도

2)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2024.12.), 「(가칭)서울강율초등학교 설립 계획」
3) 강빛초등학교는 2026학년도 8학급, 2027~2028학년도 18학급 규모의 일반학급이 증설될 예정으로, 이를 위하여 모듈러 교실이 강빛초중학교와 (가칭)서울강율초등학교 사이 부지에 설치될 예정임.

2028학년도에는 과밀학급 기준에 근접하고, 2029년에는 과밀학급 기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됩니다.[4)]

- 특히, 강빛초등학교는 2027년 이후부터는 과대학교 기준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학교 신설을 통해 강빛초등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표-3] (가칭)강율초 신설 시 학생배치계획 현황

(2025. 3. 10.기준, 단위 명, 학급)

학교명	구분	중장기 학생배치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가칭) 강율초	학생수					568(5)
	학급수					23(1)
	급당인원					25.8
강빛초 (0.4km)	학생수	987(5)	1,124(5)	1,608(5)	1,721(5)	1,208(5)
	학급수	37(1)	45(1)	63(1)	63(1)	37(1)
	급당인원	27.4	25.5	25.9	27.8	33.7
강일초 (1.2km)	학생수	559(10)	521(11)	481(10)	431(10)	374(10)
	학급수	28(2)	26(2)	25(2)	22(2)	20(2)
	급당인원	21.5	21.7	20.9	21.6	20.8

※ 고덕강일2지구 아파트 단지에서 서울강일초등학교로 통학하려면, 평균 1.47km(초등학생 기준 도보 30분 이상)의 거리를 이동하여야 하여 통학구역 조정을 통한 분산배치가 어려움

※ 강빛초와 (가칭)강율초 간 학생 수 조정은 개교 시점에 맞추어 통학구역 조정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

○ 또한, 동 사업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에 근거한 자체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등을 모두 완료하여 절차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가칭)서울강율초등학교는 부지 경계를 기준으로 강빛초·중학교와 직선거리로 120m 정도밖에 이격되어 있지 않은바, 두 학교가 모두 중·장기적 관점에서 저출생 추세 장기화에 영향을 받아 소규모 학교 또는 통폐합 대상학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

4) 과대학교/과밀학급 기준: 초 1,500명 초과, 중·고 1,200명 초과 / 급당인원 28명 이상
(자료 : (학교지원과) 박상혁 교육위원회 위원장 요구자료(221번) 제출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2402, 2025.2.10.))

○ 그러므로 서울시교육청은 (가칭)강율초 신설이 강빛초등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두 학교의 학생 수가 적정규모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통학구역 설정 및 적정 학생 배치 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동 사업은 무상공급 학교용지 비용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300억원 미만인 290억 2천만원으로,[5] 2024년 10월 개정·시행된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의 적용을 받아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심사를 면제받았습니다.

[표-4] 학교 용지의 총사업비 산정 방식[6]

□ **학교용지의 총사업비 산정**

- 부지 보상비(조성원가 또는 감정가 등)를 총사업비에 포함
  * 전체 용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비용을 산입하고, 개발사업시행자의 기부채납으로 일부 용지를 매입하는 경우 실제 매입비용을 산입
- 다만, **무상공급, 기부채납, 공유재산 활용 등 실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며, 도시계획 상 학교용지로 포함되어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총사업비에서 제외**
  - (무상공급) 「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영개발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 (기부채납) 「학교용지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 (공유재산) 시.도교육청 공유재산을 활용하거나, 지자체의 공유 재산을 활용하는 등 교육청의 예산 부담이 없는 경우

○ 그러나 현재 관리계획안에 적시된 총사업비 및 면적 학급수 등은 2024년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중기 서울교육재정계획 등과 비교했을 때 감소한 것으로, 동 사업의 총사업비가 해당 자료상으로는 300억 원에 근접하거나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구체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2024년 10월 작성한 「2025~2029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르면, 동 사업은 26,513㎡ 규모의

5) 전체 소요 예산 중 용지비는 제외하되 내부비품비 10억 1천 2백만원과 예비비 26억 3천 8백만원을 포함한 것임.
6) 교육부 지방재정교육과(2024.10.),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 17쪽 중 발췌.

학교용지에 총 739억 4천만원 규모로 추진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시기 제출한 「2025~2029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에는 총사업비가 294억 8천 7백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표-5] 2025~2029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상 (가칭)강율초 취득 계획[7)]

(단위 : 건, 백만원, %)

번호	지역	기관(학교)명	취득(예정)연도	재 산 표 시				금액(기준가격)	취득 목적	비고
				재산종류	소재지	지목(용도)	면적			
83	강동송파	(가칭)강율초	2029	토지 건물	강동구 강일동 53-1	학교용지	26,513	73,940	(가칭)강율초 신설	

[표-6] 2025~2029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상 (가칭)강율초 투자 계획[8)]

사업명	사업개요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소계	2025	2026	2027	2028	2029	향후
(가칭)강율초 신설	기간: 2025. 1. ~ 2030. 2. 규모: 32(1)학급 내용: 고덕강일2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증가 학생 배치	계	29,487		29,487	50	3,000	10,000	16,437		
		자체재원	29,487		29,487	50	3,000	10,000	16,437		

○ 이는 현재 동 사업의 총사업비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과소 설계된 것은 아닌지와 공사 과정 중 추가적인 사업비 증액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 2025년 7월 2일 진행된 (가칭)서울강율초등학교 신설에 대한 공공건축심의 의견에도 “총사업비 내에서 공사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부분[9)] 역시 해당 사업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내부적으로도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

7) 서울시교육청(2024.10),「2025~2029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8쪽.
8) 서울시교육청(2025),「2025~2029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47쪽.
9) 2025년 제5회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알림(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7475, 2025.7.4.)

○ **그러므로 서울시교육청은 (가칭)서울강율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사업비 지출계획과 총사업비 내에서 공사추진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소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서울성내초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 학생식당 증축(변경)의 건

○ **서울성내초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 학생식당 증축(변경)의 건은 실내체육시설과 학생 식당이 없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기존 노후 급식실을 해소하기 위하여 체육관 및 급식실, 학생식당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동 증축의 건은 제28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2018.6.29.)에서 이미 승인된 기존의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목적 및 연면적, 사업비 등의 일체 내용이 변경되어 총사업비가 56억 9천 8백만원(당초 사업비 24억 9천 5백만원 대비 228.4%) 증가함에 따라 관리계획 변경 승인 대상이 되었습니다.[10)]**

- **세부적으로 본 건은 ① 당초 '체육관 증축'에서 '급식실 및 학생식당, 연결통로 증축'이 추가되었고, ② 물가 상승에 따른 기준단가 변경의 영향을 받아 사업비가 증가했으며, ③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 확대[11)] 등 제도 변화에 의한 예산이 추가로 반영됨에 따라 총사업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10) 「공유재산법」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③ (생 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11) 2020년 1월부터 개정·시행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연면적 1,000㎡ 규모 이상의 공공부문이 관리하는 건축물은 5등급 이상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었음.
(자료 : 여기봉 기자(2020.1.30.),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본격 시행, <전기신문>,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3511 (검색일 2025-09-01))

[표-7] 공유재산 관리계획 주요 변경사항

(단위: ㎡, 명,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증감사유
세부용도	체육관 필로티	체육관 및 급식실, 학생식당, 필로티(주차장)		•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추가, 필로티 주차장 신설 등 관련 사업비 반영 (4,488,294천원) • 시설 완성연도 변경에 따른 체육관 면적 변경 반영 및 2025년 공사단가 반영 (996,840천원) • 발주여건 변화 (212,569천원)
층 수	2층	3층	1층	
연 면 적	994	2,127	1,133	
예 산 액	2,495,000	8,192,703	5,697,703	

[표-8] 변경사유별 사업비 증감 내역

사업비 증가 사유	
물가 상승에 따른 2025년 기준 단가 적용 [강당겸체육관]	시설 완성연도 변경에 따른 체육관 면적 변경 반영 및 원자재 물가급등 등 물가상승에 따른 2025년 학교시설증축사업 시설비 기준단가 적용 (2018년 → 2024년 체육관 증축 기준단가 변동: 1㎡당 1,327천원 증가) (체육관 면적 및 기준단가 변경 반영: 996,840천원)
확보시설 추가 [급식실 및 학생식당 등]	(당초) 체육관 증축 (금회) 필로티(주차장 활용), 체육관, 급식실 및 학생식당, 연결통로 증축 (급식실, 학생식당, 공용면적 증가: 4,488,294천원)
발주여건 변화	원격 검침 전자식 계량기 설치, 공사 안전 강화 비용 반영 등 발주여건 변화 (각종 인증비 및 용역비 등 신규 반영: 212,569천원)

○ **2018년 최초 심의 당시 동 증축의 건은 우천 시 학생 체육활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교육 공간 부족 문제 해소 및 지역사회의 문화 및 생활체육시설 제공을 목적으로 운동장 남서측에 별동으로 연면적 994㎡ 규모의 체육관을 증축하는 사업이었습니다.**[12)]

- **또한, 성내초등학교는 2018년 당시 정부로부터 개방형체육관 조성 사업대상교로 선정되어 국민체육진흥기금 8억 3천 5백만원과 강동구청 전입금 5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이었고, 교육청의 「체육관 증축 재정투자 중장기 추진계획」에**[13)] **근거하여 우선순위와 무관하게**

12) 서울시교육청(2018),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업설명서」, 78-83쪽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이었습니다.[14]

○ 그런데 성내초등학교 체육관 증축은 2019년 학교공간혁신사업(개축) 추진을 이유로 중단되었고, 2021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개축)로 사업 내용을 다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학교 구성원 반대로 사업 자체가 무산되면서 체육관 증축 논의가 한동안 전개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동 사업은 2023년 8월이 되어서야 강당 겸 체육관과 함께 학생식당, 급식실을 추가 증축하는 내용으로 추진계획이 변경되었으며,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 자체재정투자심사 등의 사전절차를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표-9] 성내초등학교 체육관 등 증축 관련 추진 경과

추진경과	추진 내용
2018.06.29.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원안가결) (강당 겸 체육관)
2019.08.09.	강당 겸 체육관 증축에서 학교공간혁신사업(개축사업)으로 변경
2020.02.05.	서울시교육청 개축심의 가결
2021.06.08.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개축사업) 선정
2021.12.2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제외(학교 설문조사 후 철회 요청)
2023.07.25.	체육관,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요청
2023.08.28.	학교시설 증축사업 추진계획 변경
2023.10.18.	사전기획용역 착수
2024.08.01.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용역 착수(건폐율 완화)
2024.07.12.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추진
2024.09.06.	제9회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2024.09.26.	공공건축심의 결과 통보(조건부 채택) -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 과업지침서 세부 명기사항 수정 - 학생참여기획 필요 - 설계추진 시 보차도분리 검토 필요 - 일조권 검토 필요

13)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과-3721(2013.06.10.), '체육관 증축 재정투자 중·장기 추진계획 변경(안)' "지자체 등의 외부기관 지원 활성화 유도(복합화사업이 확정된 학교는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지원)"

14) 서울시교육청(2018),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업설명서」, 78-83쪽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추진경과	추진 내용
2024.09.27.	자체재정투자심사(조건부 적정) - 건폐율 변경 확정 후 추진 - 축구부 기준면적 확보 검토
2025.04.10.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원안가결)
2025.07.31.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 (결과: 적정)

○ 성내초 체육관 등 증축 변경의 건은 사업계획 변경 수립 이후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자체재정투자심사 등을 모두 이행하였는바, 사업 추진에 있어 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한편, 동 사업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보차도 분리와 건물 증축이 운동장의 일조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조건부 채택”되었으며,[15] 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건폐율 변경 확정 및 축구장 기준 면적 확보 검토 후 추진해야 한다는 사유로 “조건부 적정” 결정을 받았습니다.[16]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검토 결과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등에 일조권과 보차도 분리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2025년 4월 건폐율 변경이 완료되었으며, 축구장 면적에 대한 추가 검토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17]

○ 또한, 동 변경의 건은 학생 식당과 체육관 미보유에 따른 교실배식 및 실내 체육활동의 제약 등을 해소하고, 노후한 조리실 등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사업 내용상으로도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성내초등학교는 2024년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급식실 및 체육관 사업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어 해당 권역의 타 학교와 대비할

15) 2024년 제9회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알림(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10845, 2024.9.26.)
16) 2024년 제4회 자체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알림(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관-8716, 2024.9.30.)
17) 사업설명서 38쪽 참조

때 사업 추진의 필요성도 상당 부분 확인되고 있습니다.

○ 덧붙여 사업계획상 제시된 조리장 면적 270㎡와 학생 식당 면적 557㎡가 서울시교육청의 「학교급식 환경개선 매뉴얼」에 따른 급식 규모별 최소 조리장과 식당 면적 기준을[18] 상회하고, 체육관 면적 922㎡ 역시 교육부의 학교신설비 교부기준과 비교할 때[19] 과소·과대하지 않는 등 시설 면적에서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표-10]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내 급식실 및 체육관 증축 순위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급식실 사업대상 학교	성내초	선린초 상일초 성내중			대명초 송파중	
체육관 사업대상 학교	성내초	상일초 선린초 풍납초				신천초 남천초

[표-11] 성내초등학교 향후 5학년도간 학생배치계획 현황

(단위 : 명, 학급, 명)

학교명	구분	중장기 학생배치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성내초	학생수	738(11)	775(12)	724(11)	671(10)	821(12)	790(12)
	학급수	37(2)	37(2)	35(2)	32(2)	40(2)	38(2)
	급당인원	21.1	22.1	21.9	22.3	21.6	21.9

※ ( )는 특수학급수로서 본 수에 포함, 급당인원은 전체 학생 수를 일반학급 수로 나누어 산정

○ 상술한 사항을 종합했을 때 서울성내초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

18) 「2024년 유초중등 교육통계 하반기 주요 결과」에 따른 2024년 10월 기준 서울성내초등학교의 학생 수는 786명, 교직원 수는 73명임. 또한,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향후 5년간(2026~2030학년도) 학생배치계획 상 예측되는 학생 수는 671~821명 수준이고, 준공 시점(2028학년도)의 예상 학생 수는 671명임. 따라서 예측기간 중 학생 수가 가장 많은 2029학년도의 학생 수 821명, 교직원 수는 73명(2024년 10월 현행 교직원 수를 고정하여 적용)을 기준으로 기준 면적 충족 여부를 확인하였음.
이 경우 「학교급식 환경개선 매뉴얼」(서울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2022)에 따라 조리장 면적은 260㎡ 이상(급식인원 600~899명 기준), 학생 식당 면적은 초등학교 식당 면적 산식인 (학생/2.0 ×1.20) + (교직원수/1.6 ×1.3)을 적용했을 때 551.9125㎡를 충족해야 함.

19) 서울시교육청의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 기존 학교의 체육관 증축 시 기준면적은 30~36학급의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922㎡임. 교육부의 학교신설비 교부기준은 해당 지침의 48쪽을 참조.

학생식당 증축의 건은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건축심의, 공유재산심의 등의 사전절차 및 이에 따른 제반 검토를 모두 완료하였는바, 사업목적과 내용, 절차적 측면에 있어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한편, 본 건은 2018년 6월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7년 2개월여 만에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의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비교했을 때 사업목적, 재원마련 방안 및 규모, 증축 시설 및 제반 여건(기준단가, 사업 절차 등에 관한 관계 법령 등)이 모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 사업은 2018년 6월 당초 승인받은 '체육관 증축'의 건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을 수준의 내용상 변경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동 사업추진은 통상적인 체육관 증축사업의 절차적 흐름에 비추어볼 때 과도하게 지연된 행정처리로 볼 수 있으며, 그만큼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향후 지연사유에 대한 평가와 점검을 통해 시설사업 전반의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특별히 본 건은 당초 체육관 증축 사업에서 외부재원 50%를 조달할 수 있었음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1년여 만에 학교공간혁신사업(개축사업)으로 내용을 변경했고, 개축사업 변경 1년여만에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 선정하는 등 사업 시행에 따른 의사결정이 정책의 연속성이나 일관성을 훼손하는 형태로 전개되었습니다.

- 상기한 사업 추진방식은 정책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고, 예산이라는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며, 정책 추진을 지연시켜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사업목적 달성을 순연시키는 측면이 있는바, 서울시

교육청은 향후 본 건과 같은 사례가 다른 시설사업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더욱이 서울성내초등학교 체육관 증축의 건은 2021년 12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이 철회된 이후 학교가 체육관 등의 증축을 요청한 2023년 7월까지 1년 6개월간 기승인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은[20]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수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될 때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도록 규정합니다.**

○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12월 개축사업 백지화 이후부터 학교가 사업 재추진을 요청한 2023년 7월까지 별도 사업계획이나 행위 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취소하지 않고 방치한 것입니다.**

○ **집행기관의 이러한 부작위 행위 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지방의회 의결 없이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한 것과 동일하게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사업이 중단되거나 사실상 추진이 불가한 사업이 제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20)「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나. 취득 및 처분의 건(2건)

3) (가칭)성진학교 신설의 건

○ (가칭)성진학교 신설의 건은 성동구 성수동2가 소재 성수공업고등학교 이전적지를 활용하여 지체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를 설립하려는 것으로, 22학급 136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지하1층, 지상4층 (부지면적 8,000㎡, 건축 연면적 11,648㎡) 규모의 특수학교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 동 신설의 건은 폐교 이전부지를 활용하여 별도의 용지확보 비용이 필요하지 않으며, 설계비 및 시공비 등 총 492억 8천 5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 (가칭)성진학교는 서울 동북권의 특수학교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9년 3월을 목표로 개교를 추진하는 지체장애 학생 대상 특수학교입니다.

○ 2025년을 기준으로 서울시 내 특수교육대상자는 총 14,909명으로 이 중 30%가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특수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특히 주목할 점은 최근 5년간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가 402명 증가할 동안 특수학교는 단 한 곳도 증설되지 못했다는 것으로,[21] 이러한 사실은 서울시 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특수학교의 증설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자치구 중 성동구와

21)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서울시 특수학교 통계, http://115.84.165.40/dataList/10711/S/2/datasetView.do (검색일 2025-09-03)

영등포구 등 8개 자치구는 단 1곳의 특수학교도 없는 상황입니다.[22]

- 이 역시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선택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못할 수 있고, 중도·중복장애를 가진 학생이나 더욱 전문적인 개별화 교육을 요구하는 학생이 특수학교를 진학하는 데 있어 적정 통학 거리 내 교육기관 확보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12] 최근 5년간 서울시 내 특수교육대상자 현황(기관유형별)[23]

(단위: 명, %)

연도	특수교육 대상자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영아)
			특수학급	일반학급	
2025	14,909	4,502 (30.2%)	8,021 (53.8%)	2,345 (15.7%)	41 (0.3%)
2024	14,546	4,531 (31.1%)	7,646 (52.6%)	2,369 (16.3%)	50 (0.3%)
2023	13,888	4,309 (31.0%)	7,297 (52.5%)	2,282 (16.4%)	43 (0.3%)
2022	13,366	4,062 (30.4%)	6,727 (50.3%)	2,577 (19.3%)	55 (0.4%)
2021	12,955	4,040 (31.2%)	6,370 (49.2%)	2,545 (19.6%)	69 (0.5%)

[그림-1] 서울시 자치구별 특수학교 분포도[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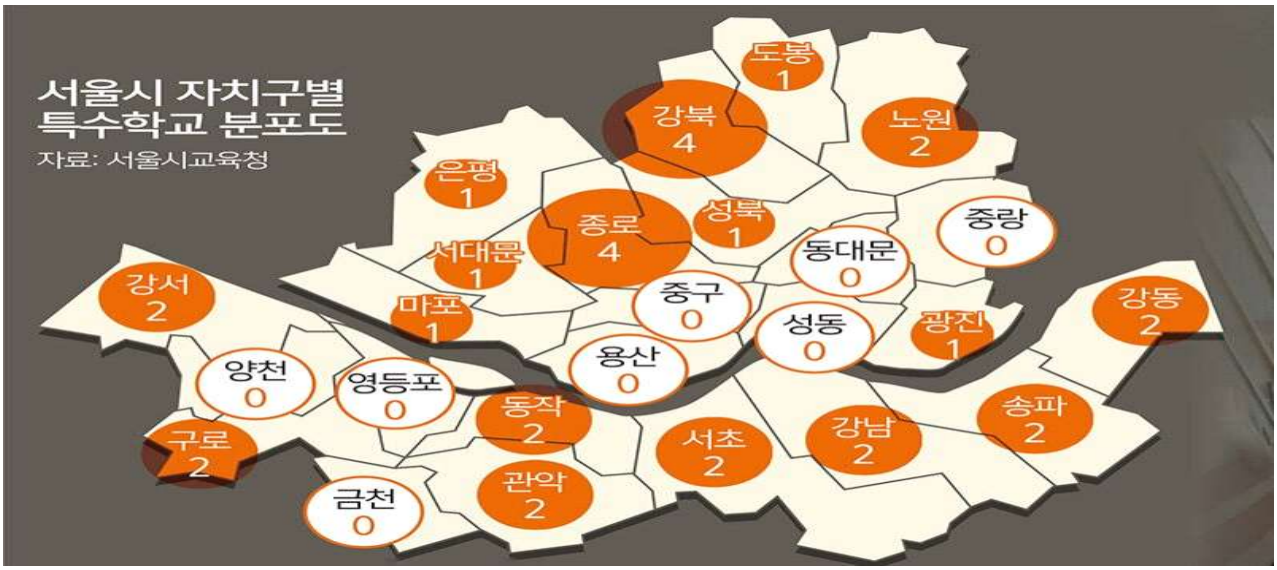

22)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과(2025), 「2025 서울특수교육」, 121쪽에 첨부된 '2025학년도 서울 특수교육 기관 현황(특수학교 현황)'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것임.

23) 교육부의 2021~2025년 특수교육통계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임. https://www.moe.go.kr/boardCnts/listRenew.do?boardID=316&m=030214&s=moe (검색일 2025-09-03)

24) 장한서·이지민·김유나 기자(2025.8.25.), [단독] 서울 8개 자치구 특수학교 '0'… "갈 수 있다는 게 감사할 뿐" [심층기획-'님비'에 갇힌 특수학교],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824508550 (검색일 2025-09-03).

○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은 「2025~2029학년도 특수교육기관 학생배치계획」에서 (가칭)성진학교와 (가칭)동진학교 개교가 이뤄지더라도 해당 기간 내에 서울시 내 특수학교 급당 인원이 증가한다고 예측하는바,[25] 상술한 사항을 종합할 때 본 건을 포함하여 서울시 내 특수학교 신설에 대한 수요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표-13] 특수학교 학생배치계획

(2024.12.30. 기준, 단위: 개교, 명, 학급, 명)

학교명	구분	중장기 학생배치계획(단위 : 명)				
		2025	2026	2027	2028	2029
(가칭) 성진학교	학생수					136
	학급수					22
	급당인원					6.2
지체장애 영역	학교수	7	7	7	7	8
	학생수	1,229	1,268	1,251	1,250	1,389
	학급수	247	248	241	238	259
	급당인원	5.0	5.1	5.2	5.3	5.4
서울 전체	학교수	32	32	33	33	34
	학생수	4,712	4,795	4,898	4,910	5,035
	학급수	856	855	865	862	883
	급당인원	5.5	5.6	5.7	5.7	5.7

※ 특수학교의 장애영아 및 전공과 제외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동 사업 추진을 위해 2024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와 개축심의위원회 심의 및 자체재정투자심사, 2025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등을 진행하였으며, 공공건축심의 및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적정” 의견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 이 중 공공건축심의에서는 지하 주차장 면적의 적정성과 공사비 및 설계비 산출 등에 관한 추가 검토를,[26] 중앙투자심사에서는 개교 전 지적분할 및 적정 공용면적 확보를 조건으로 승인이 이뤄졌습니다.[27]

---

25) 특수학교는 일반학교와 달리 매 학년도마다 수립하는 「특수학교 신입생 선정 및 배치 계획」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소재 특수학교 32교 전체에 학생을 배치하고 있음.

26) 2024년 제6회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알림(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6974, 2024.6.24.)

27) 2025년도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알림(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관-813, 2025.1.24.)

-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주차장 면적과 공사비 산정 근거 등에 대한 재검토를 시행하는 등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의견에 대한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 추가로 본 건은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2023년 11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했으나[28] 설립 반대 의견은 없었으며,[29] 2025년 6월 2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30] 등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 따라서 (가칭)성진학교 신설의 건은 설립 수요나 추진 절차 등의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31] 따라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할 특수교육기관 확보 노력을 이행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본 건 추진 과정에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부대의견인 개교 시까지 토지분할 확정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맞는 적정 공용면적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 등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동 사업은 일부 주민과 장애학생 보호자 단체 등을 중심으로 사업 재검토와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의견이 양립하고 있으며,[32] 일각에서 제기된 재검토 의견의 핵심은 성수동 지역의 지역개발 여건을 고려할 때 해당부지에 일반학교 설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33]

---

28) (가칭)성진학교 신설(안) 행정예고(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3-357호, 2023.11.28.)
29) 의회신문고 접수민원 처리 결과 제출(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17298, 2024.11.1.)
30) (가칭)성진학교 설립 주민설명회 결과 보고(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10818, 2025.6.30.)
3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의 확충·정비
제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2) 정성진 기자(2025.8.28.), "장애 아이들, 설움 주지 마라"…또 무릎 꿇은 부모들, <SB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233561 (검색일 2025-09-03)
정인지 기자(2025.6.23.), 주민반발 부딪친 성동구 특수학교 설립…시의회가 관건,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62315164344253 (검색일 2025-09-03) 등
33) (가칭)성진학교 설립 주민설명회 결과 보고(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10818, 2025.6.30.)

○ 학교 폐교는 지역사회 내 주요 공공시설의 상실을 의미함과 동시에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공적 역할을 부여받는 상황적 변화로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폐교 활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 관련하여 교육부·행정안전부의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은 법적 절차가 아니지만, 폐교재산의 취득 특수성을 고려해볼 때 사전 분쟁 방지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등에게도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며 "충분한 의견수렴 기간을 주어야 한다" 고 밝히고 있습니다.[34]

○ 더욱이 특수학교 등의 설립은 서진학교나 서울커리어월드(現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비롯한 최근 사례에 비추어볼 때 지역사회의 우려나 갈등 등을 초래할 수 있는바, 사업 추진을 위한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설득과 노력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 예컨대 (가칭)동진학교는 주민 우려 등으로 위치만 9차례 변경되었고, 서진학교 역시 공유재산 심의 후까지 지역주민의 반대 의견이 존재하였으며,[35]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일부 주민에 의해 공사 차량 진입까지 저지되는 등 상당한 갈등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36]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이후에도 성진학교 설립 등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 제고 노력을 꾸준하게 전개해야 할 것이며, (가칭)성진학교 부지 내 구축 예정인 지역사회 연계시설 활용 방안을[37] 포함하여 사업 전반에 있어 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34) 교육부·행정안전부(2025.4.),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 12쪽
35)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 내부자료(2025.8.28. 제출)
36) 강혜민 기자(2015.12.4.), '커리어월드' 반대 주민들 '센터 설립 무효화' 행정소송 제기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9136 (검색일 2025-09-03)
37) 현재는 (가칭)서울특별시교육청AI융합진로직업교육원 설립이 예정되어 있음.

4)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 매각 및 기부채납의 건

○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 매각 및 기부채납의 건은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연계한 서울영화초등학교 및 영등포고등학교의 부지 정형화를 위해 602㎡의 토지를 매각하고, 551㎡의 토지를 기부채납 형식으로 무상 취득하는 것입니다.**

- **본 건은 2023년 9월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노량진8조합')의 매수신청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제4항은[38] 정비사업에 포함된 공유재산의 매각 또는 임대는 사업시행자 등에게 한해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근거하여 본 건은 노량진8조합의 매수신청과 이에 근거한 기부채납 및 매각협의서 체결,[39] 2025년 7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는바, 절차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협약서 역시 매각가 산정이나 소유권 이전 등에 있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절차와 내용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며, 기부채납 및 매각 이후 담장이나 시설물 축조 등에 대해 학교 등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내용상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기부채납 대상 토지 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40]**

---

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국유·공유재산의 처분 등) ④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

39) 노량진8구역주택재개발조합 토지 기부채납 및 매각 협약서(2025.6.20., 협약 당사자 :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서울영화초등학교 및 영등포고등학교 교장)

4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양도되지 않는 토지이고,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서[41] 고시된 면적만큼 기부채납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더욱이 본 건은 결과적으로 서울영화초등학교와 영등포고등학교의 학교부지를 부정형 토지에서 정형 토지로 만든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교육감 소유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림-2] 토지 매각 및 기부채납 예정부지 현황

주) 청색으로 표시된 부지는 기부채납, 적색으로 표시된 부지는 매각 예정 부지임.

○ 다만, 해당 토지 매각 및 기부채납의 건의 협약서는 서울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작성 또는 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4545호, 2017.1.17. 타법개정, 2018.1.18. 시행)으로, 노량진8구역 최초 사업시행인가일 2018.1.19. 당시 시행된 법률을 기준으로 인용한 것임)

41)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서(인가번호 제2025-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구체적으로 협약서 제10조가[42] 효력 발생 시점을 "협약서에 직인 날인 후 서울시교육청 공유재산심의위원회(관리계획) 통과 시"로 명시하고, 협약서 제7조제2항은[43] "서울시교육청 공유재산심의위원회(관리계획) 등의 절차상 부결시" 재협의하여 추진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해당 조항은 협약당사자인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 서울시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달리 그 이후 진행될 서울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결정의 가능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지방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주민의 대표기관의 사전 의결을 받는 법령 사무로 강행성과 구속력이 있는 행위이고,[44] 이 과정에서 지방의회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대상 일부를 제외시키거나 수정·변경 또는 원안과 다른 대안으로의 결정이 가능합니다.[45]**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통과 이후에 협약의 효력을 발생하도록 규정한 동 사업의 매각 및 기부채납 협약서는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수립대상이 되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매각 등에 관한 협약서는 지방의회 의결 이후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그러므로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의대상이 되는**

---

42) 제10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서에 직인 날인 후 **서울시교육청 공유재산심의위원회(관리계획) 통과 시 발생하며, 부결 시 상호 재협의하여 협약을 추진한다.**

43) 제7조(매각) ②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교육지원청"이 귀속되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대상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한되거나 **서울시교육청 공유재산심의위원회(관리계획) 등의 절차상 부결 시, 재협의하여 추진하고**, 이에 대하여 "8조합"은 이를 원인으로 한 기타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

44) 행정안전부·한국지방행정공제회(2024),「2024 공유재산 업무편람」, 30쪽.

45) 위의 책, 35쪽.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이 협약서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경우 협약의 효력 발생 시점을 “서울시의회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여 확정한 이후”로 협약서에 명시하여 관련 사무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 취소의 건(1건)

5) (가칭)서울대방유치원 신설(취소)의 건

○ **(가칭)서울대방유치원(이하 ‘대방유치원’) 신설 취소의 건은 지난 제29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0.12.16.) 내용 중 대방유치원 신설의 건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당초 대방유치원 신설의 건은 서울대방초등학교 내 1,450㎡ 부지에 10개 학급, 170명의 원아를 수용하는 건축 연면적 2,970㎡ 규모(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공립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 **그러나 대방유치원 신설은 2024년 제3회 서울시교육청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가칭)서울신길유치원 신설을 위해서는 “대방유치원이 병설유치원으로 전환하거나 학급 규모를 축소하여 진행”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46]

○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및 남부8취학권역의 원아수 추이, 해당 권역 내 유아배치시설 분포 및 학부모 취학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방유치원 신설 취소를 추진하였습니다.**

○ **한편, 대방유치원 신설 취소의 건은 지난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4.12.13.)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46) 2024년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알림(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18178, 2024.8.8.)

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되고,[47]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2025.3.5.)에서 지역주민 의견과 유아수용률 등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성을 이유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삭제된 바 있습니다.[48]

○ 상술한 배경 아래 동 취소의 건은 2024년 12월과 2025년 2월에 제출된 사항과 동일하게 '(가칭)서울대방유치원 신설계획'을 취소하기 위해 다시 제출된 것입니다.

■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 이후 집행기관의 조치사항에 관한 검토

○ 우선, 2025년 3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동 건을 취소할 당시 그 사유로서 제시했던 "해당 유치원이 있는 취학권역의 유아수용률과 단설유치원 설립취소 필요성, 지역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에 관하여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한 조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4월 1일 서울대방초등학교 구성원과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가칭)대방유치원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여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습니다.[49]

- 간담회에서 지역주민은 신길유치원과 대방유치원을 하나의 통학구역으로 보는 것은 도로 사정상 적절하지 않고, 대방초등학교가 위치한 신길7동은 취원 수요가 충분하며, 학생 수가 1,300명이 넘는 대방초등학교의 사정상 별도의 공간과 인력이 운영되는 단설유치원이 운영

47)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회의록(2024.12.13.) 참조
48)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 회의록(2025.3.5.) 참조
49)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의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사항 제출(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5473, 2025.4.11.)

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50]

○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설립 수요에 대한 사정변경 없이 기존 견해와 동일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 취소를 재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 11월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자료에서 대방유치원이 위치할 남부8취학권역 내 공립 병설유치원만 5개원(총정원 274명)이[51] 운영되고 있고, 유치원의 원아 수용률은 68.7%에 불과하며, 어린이집을 포함한 유아수용률은 128.9%라는 점 등을 사업 취소의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52]

- 추가로 본 건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2025학년도 남부8취학권역의 유아수용률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는데, 이는 유아교육·보육기관의 정원이 감소하였음에도 취원 대상 원아 수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하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해당 취학권역 내 유치원 현황을 살펴보면, 남부8취학권역 내 유치원의 2025학년도 충원율은 공립 59.7%, 사립 80.5%로, 해당 권역 내 다수의 유치원에서 모집 정원만큼의 학생이 등록하지 않아 정원이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표-14] 남부8취학권역 내 유아 수용 전망

연도	취원 대상 유아수 (a)	유치원 정원(b)			어린이집 정원 ①	유치원 취학수요(c)			과부족(d=b-c)			유아수용율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유치원 (e=b/a)	어린이집 포함 (f=b+①/a)
2020학년도	3,257	336	1,723	2,059	2,432	2,237	356	2,593	△1,901	1,367	△534	63.2	137.9
2024학년도	2,758	274	1,622	1,896	1,660	681	1,013	1,694	△407	609	202	68.7	128.9
2025학년도	2,415	280	1,581	1,861	1,492	754	751	1,505	△474	830	356	77.1	138.8

50) 위의 자료.
51) 대방초병설유치원은 휴원으로 제외하였음.
52) 서울시교육청(2024.1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업설명서」, 135~144쪽.

[표-15] 남부8취학권역 내 유치원 현황

구분	유치원명	주소	당초(2020)		변경(2024)			2025학년도		
			학급수	정원	학급수	정원	현원	학급수	정원	현원
공립	대동초병설유	영등포구 대림동	3	64	3	52	38	3	52	36
	대방초병설유 ('24.3월 휴원)	영등포구 신길동	2	48	-	-	-	-	-	-
	도신초병설유	영등포구 대림동	4(1)	64(4)	4(1)	52(4)	27(4)	4(1)	52(4)	17
	영림초병설유	영등포구 대림동	2	48	3	52	29	3	52	31
	우신초병설유	영등포구 신길동	6(1)	112(4)	5(1)	66(4)	48(4)	5(1)	70(4)	46
	대길초병설유 ('22.3월 신설)	영등포구 신길동	-	-	3	52	38	3	52	36
사립	굿프랜드유	영등포구 신길동	8	180	8	180	170	8	180	135
	동천유	영등포구 신길동	3	75	3	72	50	3	53	24
	명신유	영등포구 신길동	5	112	5	108	100	5	106	102
	살레시오성미유	영등포구 신길동	9	225	9	216	202	9	216	208
	성락유 ('25.4월 폐원)	영등포구 신길동	5	105	5	66	9	-	-	-
	성모유	영등포구 신길동	5	130	5	124	117	5	128	116
	신길에덴유	영등포구 신길동	3	73	3	72	45	3	46	20
	신라유	영등포구 신길동	3	75	3	72	34	3	53	21
	우성유	영등포구 신길동	4	105	4	100	41	4	72	42
	큰나무유	영등포구 대림동	6	150	6	144	106	6	132	132
	파란나라유	영등포구 대림동	10	220	10	220	185	10	220	156
	파랑새유	영등포구 대림동	5	125	5	124	73	5	90	63
	평강유	영등포구 대림동	5	130	5	124	116	5	128	127

○ **따라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대방유치원 설립 취소의 건은 간담회를 통해 지역주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했고, 학생배치계획상 해당 권역의 배치여건이 오히려 개선되었으며, 동일 취학권역에 공립 단설유치원인 (가칭)신길유치원이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사업 취소에 따른 절차적, 내용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서울대방초등학교 현장 조사 결과 등에 관한 검토

○ 한편, 서울대방초등학교가 본 건에 대한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하여 학교시설 관리와 학사 운영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 2025학년도 기준 서울대방초등학교는 학생 수 1,321명, 교원 수 95명, 학급 수는 59학급에 달하는 대규모 학교로,[53] 2020년부터 부족한 공간 수요 대응을 위해 지하 1층, 지상 5층(건축연면적 7,035.64㎡) 규모의 별관 증개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54]

- 그런데 서울대방초등학교는 대방유치원 신설 취소 시 증개축 예정인 별관에 병설유치원 설립이 계획됨에 따라 2025년 현재까지 증개축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의 별관동을 유지·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55]

○ 문제는 별관 증개축 지연으로 현재 해당 시설이 노후화되고 있음은 물론,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이 2020년 12월부터 설치된 모듈러 교사를 현재까지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이로 인하여 서울대방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운동장 면적의 상당 부분을 사용할 수 없고, 시설 유지보수가 제한된 별관에서 방과후 수업 등을 받고 있으며, 증축 지연에 따른 공간 부족으로 멀티미디어실이나 전용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2025년 8월 29일 현장 조사 및 학교 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실시한 결과, 서울대방초등학교는 모듈러 교사와 증축 지연에 따른 별관동 노후화, 모듈러교실 사용 장기화에 따른 운동장 사용

---

53) 교육부 학교알리미 공시 기준(2025년 5월)
https://www.schoolinfo.go.kr/ei/ss/Pneiss_b01_s0.do?SHL_IDF_CD=763e2259-9cfd-4c07-baef-c2a723e36879
(검색일 2025-09-02)

54)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3.3.29. 제출, 서울시교육감 제출) 기준

55) 기존 2학급 규모의 대방초병설유치원(24. 3월 휴원)에서 단설전환을 위한 (가칭)서울대방유치원 신설 사업 취소 후, 4학급(특수 1학급 포함) 규모의 대방초병설유치원으로 현재 증개축 진행중인 별관동 1층에 27. 3월 재개원 예정
(자료 : 서울시교육청(2024.1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업설명서」, 135쪽)

제한, 특별교실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학사 운영 전반에 있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표-16] 서울대방초등학교 현장 조사 결과

모듈러교사 및 운동장 전경	모듈러교사의 운동장 침범 부분(정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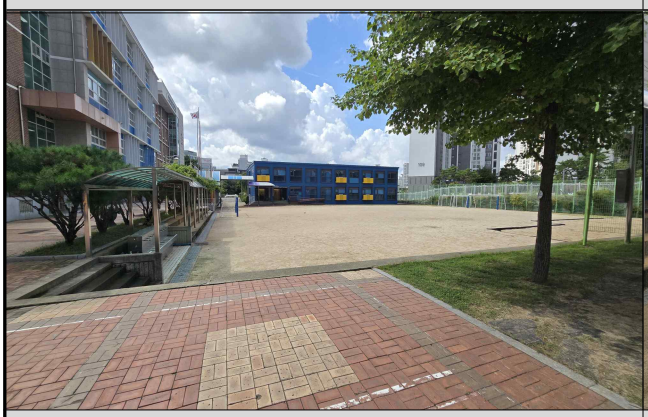	
별관동 2층 복도의 콘크리트 탈락	**별관동 2층 복도의 누수 및 콘크리트 일부 탈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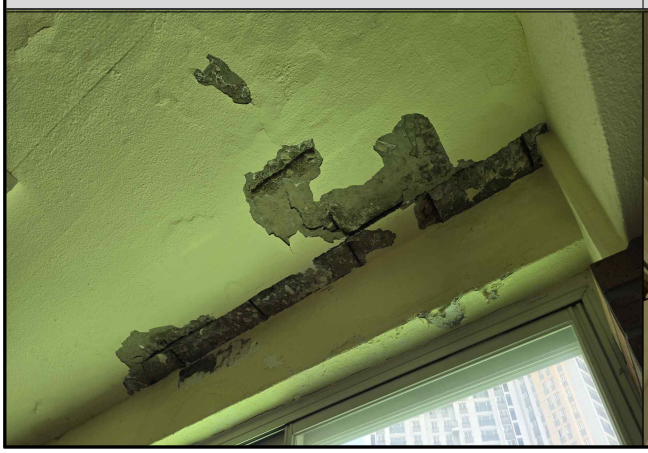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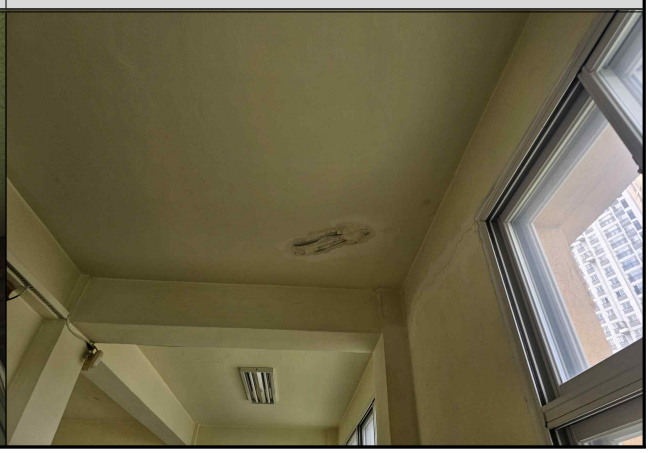

○ 그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대방초등학교의 조속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별관 증개축, 체육관 시설개선 등을 명목으로 87억 4천만원을 확보했지만,[56] 대방유치원 신설 취소 여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결정이 지연되어 현재까지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특히, 확보 예산 중 별관 증개축을 위해 편성된 77억 6천만원은 2024년 명시이월된 시설비 예산으로[57] 금년 중 공사 진행이 이뤄지지

56) 2025년 현재 별관동 시설비 예산은 78.3억원(명시 77.6억원, 사고 0.7억원), 체육관 안전시설 개선 예산은 9.1억원(현재 미집행)이 확보되어 있음.
57) 서울시교육청(2025),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 2-2」, 1377쪽.

못하면 전액 불용 처리될 예정입니다.

○ 따라서 이러한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대방유치원 신설 취소의 건은 조속한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서울대방초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별관 증개축 추진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등에 관한 검토

○ 한편, 대방유치원 신설을 주장하는 신길뉴타운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전보경)는 2025년 8월 4일 감사원에 대방유치원 신설 취소 과정에서 예산 낭비, 정보공개청구 처리 부적정, 신길유치원 신설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정 당시 대방유치원 취소 조건을 누락한 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았다는 점 등을 사유로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58]

- 참고로 해당 감사청구는 2025년 8월말 현재 감사원에서 서면조사 또는 실지조사 등을 통해 감사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동 건은 유치원 설립 수요, 지역주민 등의 의견,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현시점에서 대방유치원 설립 취소 업무에 있어 중대한 법령위반이나 부패행위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익감사 청구 여부와 별개로 신설 취소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8) 장재훈 기자(2025.8.4.일자), 신길뉴타운비대위 “대방유치원 취소, 절차 위반”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에듀프레스>,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1011 (검색일 2025-09-01)

Ⅴ. 질의 및 답변요지

○ 특수교육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학생은 안전한 통학거리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관내 특수학교 재학생 3명 중 1명은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으며, 동북권역 특수교육대상자의 70%는 타 시도나 자치구 등에 통학하는 것으로 나타남. 동 관리계획안 중 (가칭)성진학교 설립은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학생 학부모 등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고, 주민복합시설 등 설치에 있어 주민 의견 역시 원활하게 수렴되도록 교육청이 노력해주길 당부함. 또한, 많은 분께서 (가칭)성진학교 설립을 위해 노력해주신 것에 비추어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채수지 의원)

○ 서울시교육청이 (가칭)성진학교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충분한 소통을 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 서울시교육청이 문제 해결과 소통보다 갈등을 유발시킨 측면이 존재하고, 향후 특수학교 설립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함. 한편, (가칭)성진학교 인근 지역 주민이 특수학교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지역개발에 맞춰 대안 제시를 요구했다고 생각하며, 지역주민 연계시설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와 함께 일부 시의원이나 특정 정당 차원에서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 반대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자 함. (김경훈 의원)

○ (가칭)성진학교 설립 추진 과정은 아직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함. 이번 사안을 계기로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정책 전반에 있어 장애학생과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식 개선 등을 도모해야 함. (이새날 의원)

○ 이번 (가칭)성진학교 신설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을 계기로

정문학교 증축 등을 비롯하여 다른 특수학교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이뤄지길 바람. (이희원 의원)

-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살피겠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 장애학생 등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가칭)성진학교 신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에 여야 모두가 공감했다는 측면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함. 금번 (가칭)성진학교 신설의 건은 헌법에 명시된 교육권 보장, 학부모의 절박한 요구 해소, 차별 해소와 사회적 책임 등의 관점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함. 또한, (가칭)성진학교 설립은 누군가의 특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함. (전병주 의원)

○ 본 의원과 (가칭)성진학교 인근 지역 주민은 일부 언론의 왜곡된 보도와 달리 명품아파트, 혐오시설 등의 표현을 한 적이 없음은 물론 생각조차 한 적이 없음. 지역주민 등 역시 (가칭)성진학교의 성공적 안착과 학생의 교육권 보장의 관점에서 고민과 제안을 했을 뿐임. 이는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 등을 포함한 누구도 마찬가지임. 본 의원은 주민 의견을 모아 교육청에 전달해왔고, 덕수고 이전적지로의 이전을 비롯한 여러 방안을 제안해왔음.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은 절차대로 진행됐으며, 본 의원이나 지역주민에 의해 지연된 적은 없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자 함. 한편, 본 의원은 최근 (가칭)성진학교와 일반고등학교 설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안을 제안해 갈등을 해소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안을 찾고자 했으며, 서울시교육청 역시 이를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등과 연계해 검토하겠다고 화답하였음. 다만, 특수학교 신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 이후에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지역사회 연계시설 활용 방안 도출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함. (황철규 의원)

- 의원님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가칭)성진학교 설립 추진에 만전을 다할 것이며, 제안해주신 방안은 주택개발여건, 학생 수요 등을 종합하여 충분히 검토할 것임. (교육행정국장 이연주)

Ⅵ. 토론요지 : 없음.

Ⅶ. 수정안의 요지 : 없음.

Ⅷ.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Ⅸ. 부대의견 : 없음.

Ⅹ.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Ⅺ.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3116

제출연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득: 2건

o 신설: 1건

- 목적: 고덕강일2지구 주택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 배치 및 인근 강빛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사업
- 대상교: (가칭)서울**강율초**등학교

o 증축(변경): 1건

- 목적: 실내 체육관 및 학생식당 확보, 노후된 급식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시설을 증축하는 사업
- 대상교: 서울**성내초**등학교

나. 취득 및 처분: 2건

o 신설: 1건

- 목적: 서울 동북권[1]에 거주하는 지체장애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구 성수공고 건물 일부를 증개축하여 특수학교를 신설하는 사업
- 대상교: (가칭)**성진학교**

o 매각 및 기부채납: 1건

- 목적: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과의 토지 매각 및 기부채납 협의에 따라 학교용지를 정형화하기 위한 사업
- 대상교: 서울**영화초**등학교 및 **영등포고**등학교

다. 취소 1건

o 신설: 1건

- 목적: 동일 취학권역 내 (가칭)서울신길유치원 신설 추진, 원아수 추이, 유아배치시설 분포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취소
- 대상교: (가칭)서울**대방유**치원

붙임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동북권: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강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총괄표

(단위 : ㎡, 천원)

구분			내 역			세부내역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토지**	**1**	**12,000.00**	**36,108,000**	
		건물	**2**	**10,833.00**	**33,564,565**	
	신설	토지	1	12,000.00	36,108,000	○(가칭)서울강율초등학교 신설
		건물	1	8,706.00	25,371,862	
	증축	건물	1	2,127.00	8,192,703	○서울성내초등학교 체육관,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취득 및 처분	**계 (취득-처분)**	**토지**	**1**	**△213.00**	**62,028**	
		건물	**1**	**4,906.05**	**44,508,591**	
	계 (취득)	**토지**	**1**	**551.00**	**2,666,865**	
		건물	**1**	**11,678.40**	**49,284,785**	
	취득 (기부채납)	토지	1	551.00	2,666,865	○노량진8구역 내 토지 기부채납
	취득 (신설)	건물	1	11,678.40	49,284,785	○(가칭)성진학교 신설(증개축)
	계 (처분)	**토지**	**1**	**764.00**	**2,604,837**	
		건물	**1**	**6,772.35**	**4,776,194**	
	처분 (매각)	토지	1	764.00	2,604,837	○노량진8구역 내 토지 매각
	처분 (멸실)	건물	1	6,772.35	4,776,194	○ 구 성수공고 기존건물 일부 멸실
취소	**계**	**건물**	**1**	**2,970.00**	**8,149,645**	
	신설	건물	1	2,970.00	8,149,645	○(가칭)서울대방유치원 신설 취소

☐ 취득 대상 재산 목록

○ 취득(신설)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구분	사업명	소재지	재산구분	면적	기준가액	소관기관
1	신설	(가칭)서울강율초등학교 신설	강동구 강일동 53-1	토지	12,000.00	36,108,000	강동송파
				건물	8,706.00	25,371,862	
합계				**토지**	**12,000.00**	**36,108,000**	
				건물	**8,706.00**	**25,371,862**	

○ 취득(증축)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구분	사업명	소재지	재산구분	면적	기준가액	소관기관
2	증축	서울성내초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 학생식당 증축**(변경)**	강동구 성내로3길 19	건물	2,127.00	8,192,703	강동송파
합계				**건물**	**2,127.00**	**8,192,703**	

☐ 취득 및 처분 대상 재산 목록

○ 취득 및 처분(신설)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구분	사업명	소재지	재산구분		면적	기준가액	소관기관
3	신설(증개축)	(가칭)성진학교 신설	성동구 성수동2가 333-128	①취득	건물	11,678.40	49,284,785	본청
				②처분	건물	6,772.35	4,776,194	
합계				**①-②**	**건물**	**4,906.05**	**44,508,591**	

○ 취득 및 처분(매각 및 기부채납)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구분	사업명	소재지	재산구분		면적	기준가액	소관기관
4	매각 및 기부채납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 매각 및 기부채납	동작구 대방동 13-18 등 18필지	①취득	토지	551.00	2,666,865	동작관악
				②처분	토지	764.00	2,604,837	
계				**①-②**	**토지**	**△213.00**	**62,028**	

☐ 취소 대상 재산 목록

○ 취소(신설)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구분	사업명	소재지	재산구분	면적	기준가액	소관기관
5	신설	(가칭)서울대방유치원 신설 **(취소)**	영등포구 여의대방로35길 14	건물	2,970	8,149,645	남부
합계				**건물**	**2,970**	**8,149,645**	